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4. 26 선고 2023가단217415 판결 [보증채무금]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성실

담당변호사 김장곤

피 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성

담당변호사 박상현

변 론 종 결 2024. 3. 8.

판 결 선 고 2024. 4. 26.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4,355,501원 및 그중 81,622,379원에 대하여 2023. 11.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17. 8.경 보험대리점인 주식회사 C(이하 'C')에게 1억 원을 이자는 연 12%, 연체시 이자 연 24%로 정하여 대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채무'), 피고는 이 사건 채무에 연대 보증하였다.

이 사건 채무에 관하여 수시로 일부 금원들이 변제되었고, 마지막으로 2021. 2. 2. 1,090,196원이 변제되었으며, 2023. 11. 21. 현재 원리금 합계 144,355,501원, 원금 81,622,379원이 잔존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잔존 원리금 합계 144,355,501원 및 그중 대여원금 81,622,379원에 대하여 2023. 11.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상의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이 사건 채무의 소멸시효를 주장하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21. 2. 2.까지 일부 변제가 이루어졌으므로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소멸시효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사 한웅희